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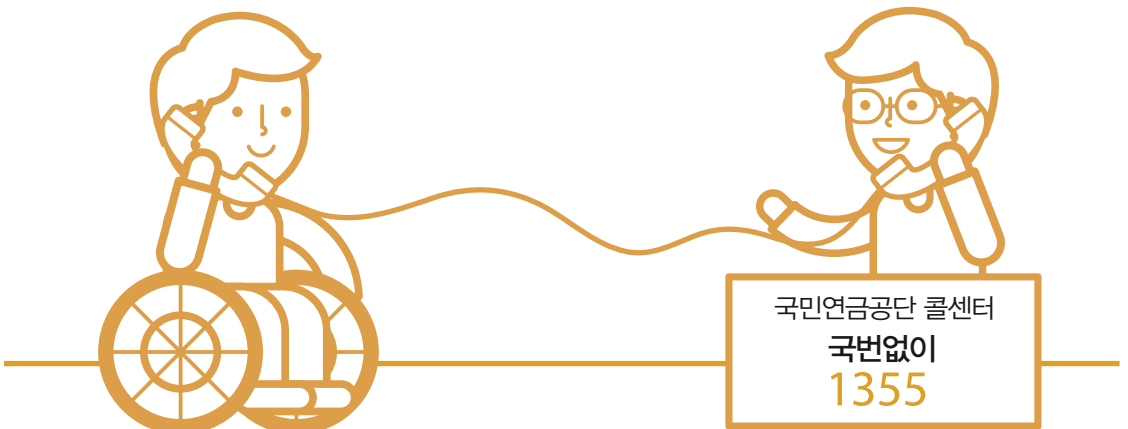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연금지사 직원과 상의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공, 안내, 상담 등 수급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하는 과정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위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담당직원이 전화 또는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드리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CONTENTS

1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01
2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02
3	신청은 어디에 하며, 어떻게 하나요?	04
4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05
5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07
6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10
7	본인부담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되나요?	12
8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14
9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16
10	서비스 이용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결제하나요?	19
11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3
12	갱신 신청이란 무엇이며 언제 하나요?	24
13	65세 이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25
14	활동보조인은 어떤 분들인가요?	26
15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7
16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30
17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31

1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무엇인가요?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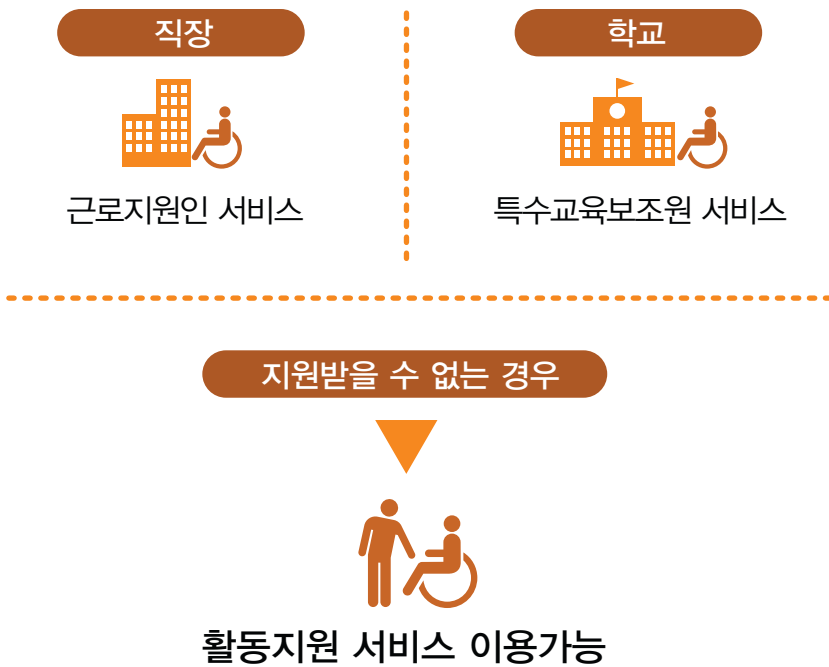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연령	장애 등급
 만 6세부터 64세까지	 1급 또는 2급 장애인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병원 등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있는 경우
-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또한,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닌 “근로지원인”(직장) 서비스나 “특수교육보조원”(학교) 서비스를 이용하셔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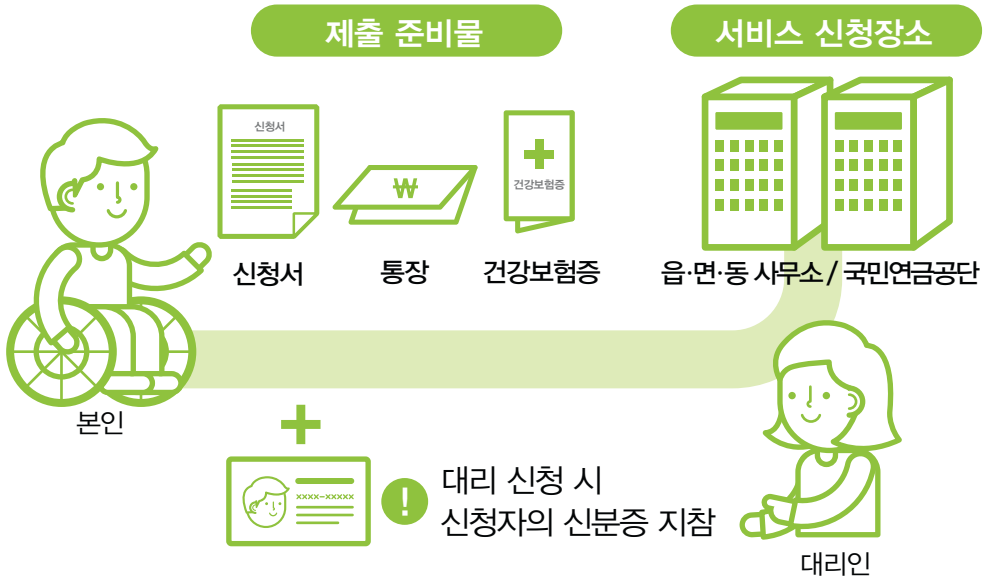


- “근로지원인”이나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어디에 하며,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비스 받으실 분의 통장(복사본도 가능), 건강보험증과 함께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다른 분이 대신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분이 대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도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공단의 담당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4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신청하신 모든 분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이 되셔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라 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 선정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수급자격심의위원회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서비스 필요 여부와 필요한 정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의사, 사회복지사, 장애인대표, 장애인복지나 활동지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급자 선정과정

-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먼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합니다.
- 2 조사 후에는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심의하게 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등급’(1등급~4등급)을 부여합니다.
- 3 신청결과(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는 시·군·구에서 우편 등으로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절차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애등급심사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2007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1,2등급)를 받으신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

● 수급자격 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를 통지합니다.

5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되시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 서비스란?

활동보조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외출을 도와 드리는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

양치나 세면 또는 목욕의 준비나 지원,
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실내에서의 이동 지원 등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식사준비 등



사회활동 지원 /

장애인이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는 경우
또는 그 외 외출 등의 이동을 지원

주의사항 - ①

- 가사활동지원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의 세탁이나 청소 등을 활동보조인에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주말에 가족들이 사용한 그릇 등을 치우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월요일에 활동보조인에게 한꺼번에 치울 것을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다만, 장애인 본인 대신 6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보조는 가능합니다.
- 수급자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또한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런 행위를 활동보조인에게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예) 활동보조인에게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일해 주거나,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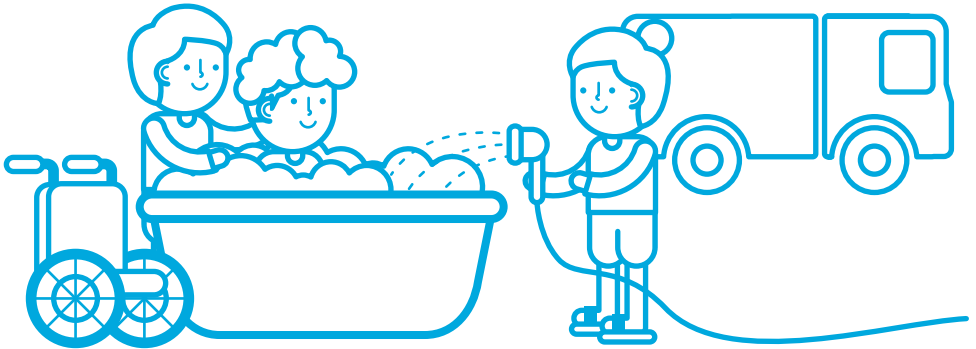
주의사항 - ②

-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해드릴 때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교통비, 입장료 등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 이용자가 원하여 활동보조인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 경우에, 공원입장료나 교통비, 간식(식사) 비용 등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 등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목욕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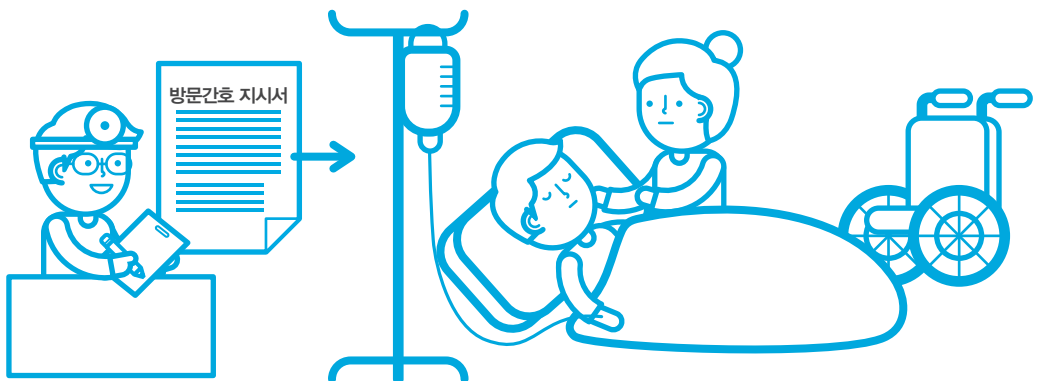
- 방문목욕 서비스는 수급자가 가정 내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가 없거나 온수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용하시면 편리한 서비스로 방문목욕 기관에서 욕조 등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방문간호란?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사’가 장애인의 가정 등을 찾아가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간호 서비스는 반드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시간(금액)은 수급자마다 다릅니다.

- 먼저, 수급자별로 책정된 '활동지원등급'(1등급~4등급)에 따라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간(기본급여, 월 약 47시간~118시간)이 주어지며,
- 수급자가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거나, 출산을 하는 경우 등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별도의 추가시간(추가급여)이 지원됩니다.
- 따라서,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 등에 따른 추가급여를 더한 시간이 수급자가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지원등급이 2등급인 수급자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2등급 기본급여인 94시간(810,000원)과 학교생활에 따른 추가급여 10시간(86,000원)을 더하여 총 104시간(896,000원)을 매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매월 정해진 시간(기본급여에 추가급여를 합산한 월 한도액)만큼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월 한도액)이 104시간(896,000원)인 수급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114시간을 이용한 경우, 초과된 10시간에 대한 비용 85,500원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사례는 활동보조 일반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에 해당됨. '심야·휴일, 방문 목욕, 방문간호' 이용시에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음.

■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 금액	🕒 시간
1등급	1010,000원	약 118시간
2등급	810,000원	약 94시간
3등급	610,000원	약 71시간
4등급	410,000원	약 47시간

■ 추가급여

내 용	₩ 금액	🕒 시간
수급자 혼자 사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2,341,000원	273시간
	684,000원	80시간
	171,000원	20시간
수급자의 가족이 1~2급 장애인 또는 18세 이하, 65세 이상만 있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2,341,000원	273시간
	684,000원	80시간
	171,000원	20시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4,000원	80시간
수급자가 법에 정해진 정규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86,000원	10시간
직장에 다니는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342,000원	40시간
생활시설 등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171,000원	20시간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결혼, 출산, 입원, 사망 등)	171,000원	20시간
가족의 직장·학교생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624,000원	73시간

* 시간: 활동보조 일반수가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

7

본인부담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되나요?

- **본인부담금이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과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월 한도액)에 따라 다릅니다.**
 -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부분을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월 한도액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 예를 들어, 활동지원등급 1등급(월 한도액 1,010,000원)으로 소득수준이 본인부담율 9%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90,900원이며, 이를 제외한 919,100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시·군·구청에서 안내해 드리는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본인 부담율	4등급 (410천원)	3등급 (610천원)	2등급 (810천원)	1등급 (1,01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37만원 이하)	6%	24,600	36,600	48,600	60,600
	100%이하 (474만원 이하)	9%	36,900	54,900	72,900	90,900
	150%이하 (710만원 이하)	12%	49,200	73,200	94,500	94,500
	150%초과 (710만원 초과)	15%	61,500	91,500	94,500	94,5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본인 부담율	86천원	171천원	342천원	624천원	684천원	2,341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37만원 이하)	2%	1,700	3,400	6,800	12,400	13,600	46,800
	100%이하 (474만원 이하)	3%	2,500	5,100	10,200	18,700	20,500	70,200
	150%이하 (710만원 이하)	4%	3,400	6,800	13,600	24,900	27,300	93,600
	150%초과 (710만원 초과)	5%	4,300	8,500	17,100	31,200	34,200	117,000

➔ '13년도 4인 가구 기준 급여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5월에 조사하여 6월부터 적용

8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본인부담금은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입금하실 계좌는 시·군·구청에서 안내해 드리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만약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 등으로 이체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확인



지정된 계좌로 입금
(매월 말일까지)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 등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완료 시
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수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수준이 변경되면 본인부담금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가구)에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건강보험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가 된 경우나 그 자격이 중지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함께 생활하는 가족(가구원)의 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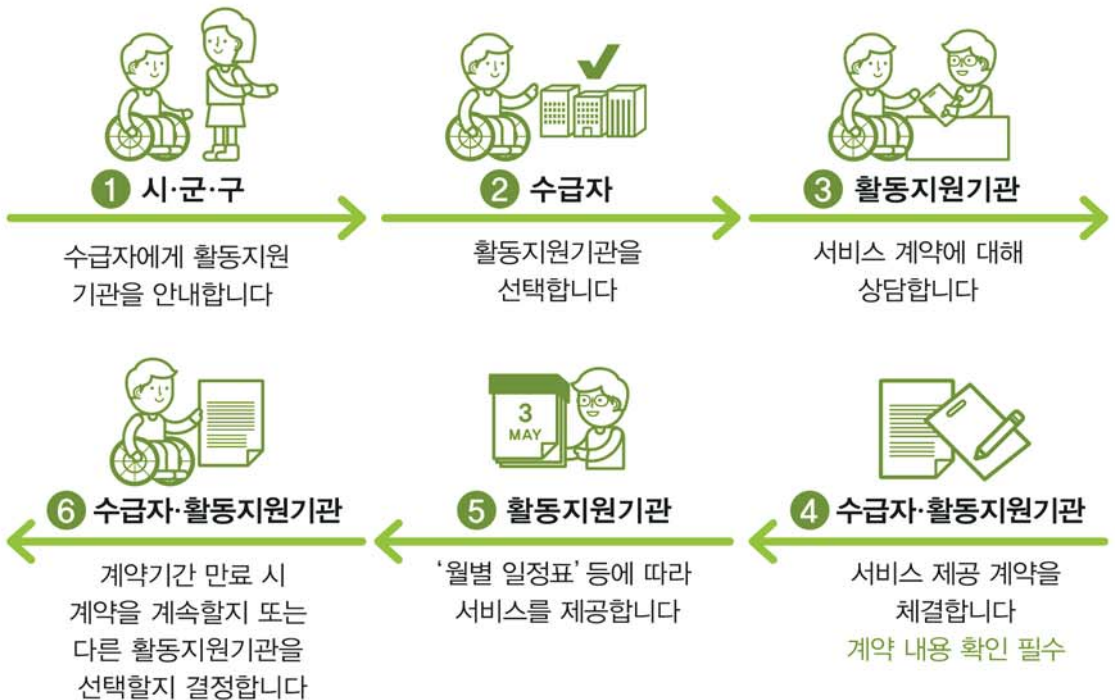
가구원에 해당되는 사람

-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 며느리, 사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손녀, (외)손자, 형제, 자매
- 수급자가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으나 서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족 모두가 가구원에 포함됨
-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은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증 등 관련서류와 함께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변경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액이 변경되어 5월에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을 하여 5월에 변경이 결정된 경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6월부터 적용됨

9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급자가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용하실 수 있는 활동지원기관은 시·군·구청에서 보내드리는 '활동지원기관 안내'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먼저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 이용일자나 시간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과 상담을 한 후에 계약을 하면 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담 내용을 가지고 '월별 일정표',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작성한 '월별 일정표'와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 활동지원기관은 이용자 및 가족 등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서비스가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안내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날짜·시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지원 급여비용명세서’를 활동지원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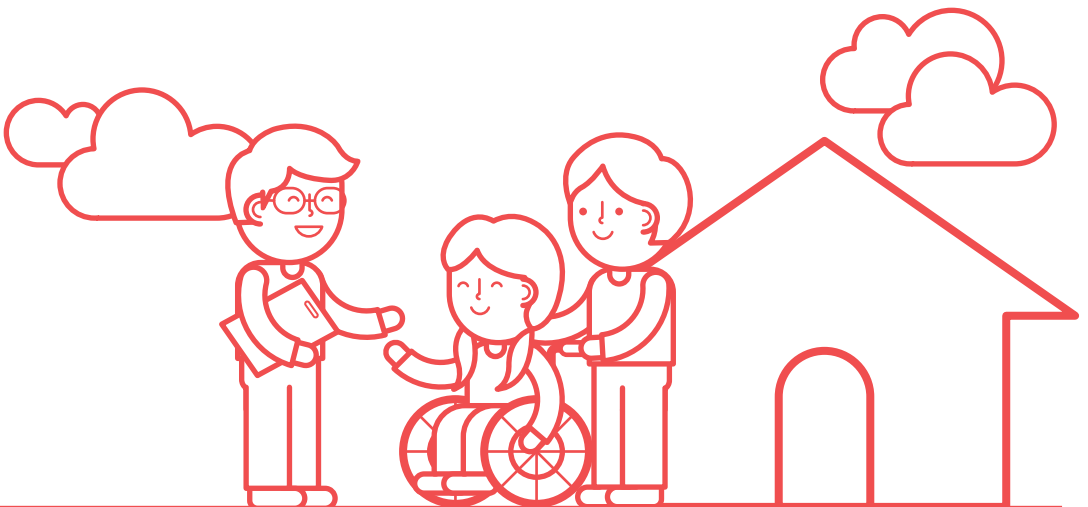
가족에게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가족은 원칙적으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수당 등과 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 다만,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이 없는 지역(섬이나 외딴 곳 등)에 사시는 경우나 감염병에 걸린 경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별도로 읍·면·동 사무소에 ‘가족에 의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며, 월 한도액은 반(5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 섬·외딴 곳이란, 단순히 외진 곳이 아니라 활동지원기관과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 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지역’)지역을 말합니다.



수급자의 권리

-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받을 권리
 -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지원인력에게 요청할 권리
 - 활동지원인력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활동지원기관과 의논하여 서비스 내용을 수정할 권리
 - 본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활동지원인력을 바꾸어 줄 것을 활동지원기관에 요청할 권리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서비스 이용 중에 본인의 신체·집·물건·식사 등에 있어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본인의 실수나 고의에 의한 경우는 예외)
-



10

서비스 이용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결제하나요?

-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되는 금액은 서비스 이용시간이나 횟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는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방문목욕서비스는 이용 횟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 예를 들어 활동보조 서비스를 3시간 이용한 경우 25,650원 (3시간×8,550원)이 결제되며,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72,540원이 결제됩니다.
- **비용의 결제는 수급자가 소지하고 계신 바우처 카드로 하시면 됩니다.**
 -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가지고 계신 바우처카드를 활동보조인의 단말기에 접촉하시면 되며,
 - 카드가 단말기에 접촉된 시간(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계산하여 해당 시간만큼의 금액이 결제(월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 ➔ 예를 들어 활동보조를 10시에 시작하여 12시에 종료한 경우 2시간이 계산되어 17,100원이 결제(월 한도액에서 차감) 됩니다.
- **바우처 카드는 비용이 결제되는 카드이므로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소지하시고 직접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 간혹, 바우처 카드를 활동보조인이나 활동지원기관에 맡겨두고 결제를 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부정결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일차적인 책임은 수급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수급자가 소지하시고 직접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 ➔ 바우처 카드를 맡기면 안되는 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결제를 하거나, 실제 서비스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 (2시간 서비스 하고 4시간을 결제)하는 등의 부정결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처가 무엇인가요?

- 바우처란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전자식 상품권으로서, 수급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수급자에게 배송해 드립니다.
*바우처카드는 월 5회(4일, 11일, 19일, 22일, 26일) 배송됩니다.
- 수급자가 매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월 한도액(납부하신 본인 부담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큼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바우처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합니다.



수급자 선정 시
바우처 카드 지급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시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계산되어 결제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 소지
및 직접 결제·사용



참고 - 급여종류별 서비스 단가(2013년 8월기준)

1 활동보조 서비스

분 류	시간당 금액 ^W / _L
매일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8,550원
심야(22시~6시)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2,830원
공휴일(근로자의 날, 토요일 제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2,830원

-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이 30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계산되며, 30분 미만이면 계산되지 않습니다.
- 심야나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12,830원은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만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8,550원이 적용됩니다.

2 방문목욕 서비스

분 류	₩ 금 액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한 경우	72,540원
이동목욕용 차량의 목욕용 장비들과 온수를 사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에서 목욕한 경우	65,410원

- 방문목욕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시간이 40분~1시간 사이인 경우에는 위 금액의 80%만 계산됩니다.

3 간호방문 서비스

1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분 류	₩ 금 액
30분 미만	31,76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39,850원
60분 이상	47,940원

- 방문간호서비스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하며,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2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1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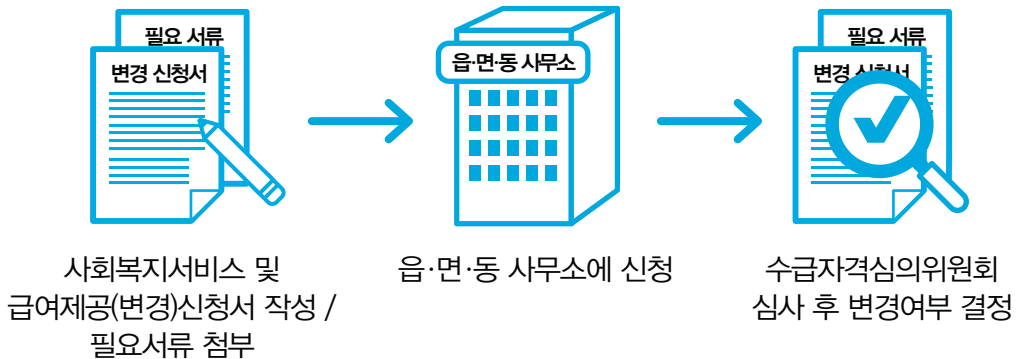
유 형	발급처	의료기관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및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7,000원	4,490원
의사가 가정을 찾아오는 경우		54,580원	10,010원

-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로부터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발급된 날로부터 1년이며, 발급비용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11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어 등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등의 생활환경 변화로 추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변경신청도 처음 신청하실 때와 같이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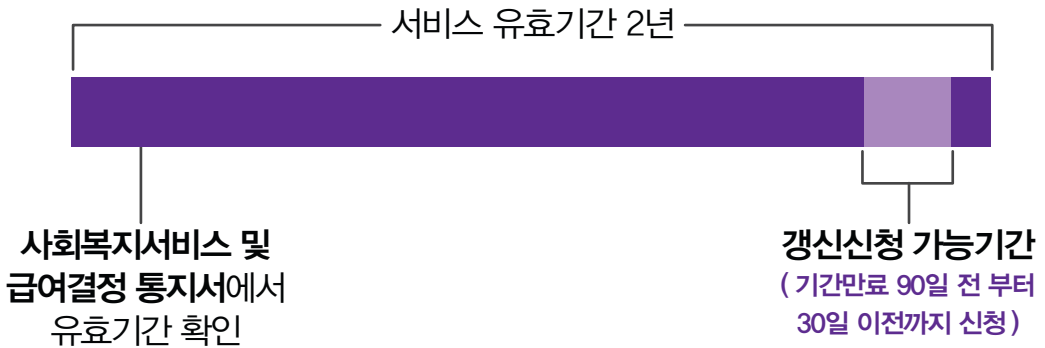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의사소견서 등 신체·정신 기능상태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재직·재학증명서 등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갱신신청이란 무엇이며 언제 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2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수급자로 선정된 후 시·군·구청에서 안내해 드리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수급자격의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갱신신청’입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전까지 하셔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계속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갱신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께는 시·군·구청에서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며, 안내해 드린 기간에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갱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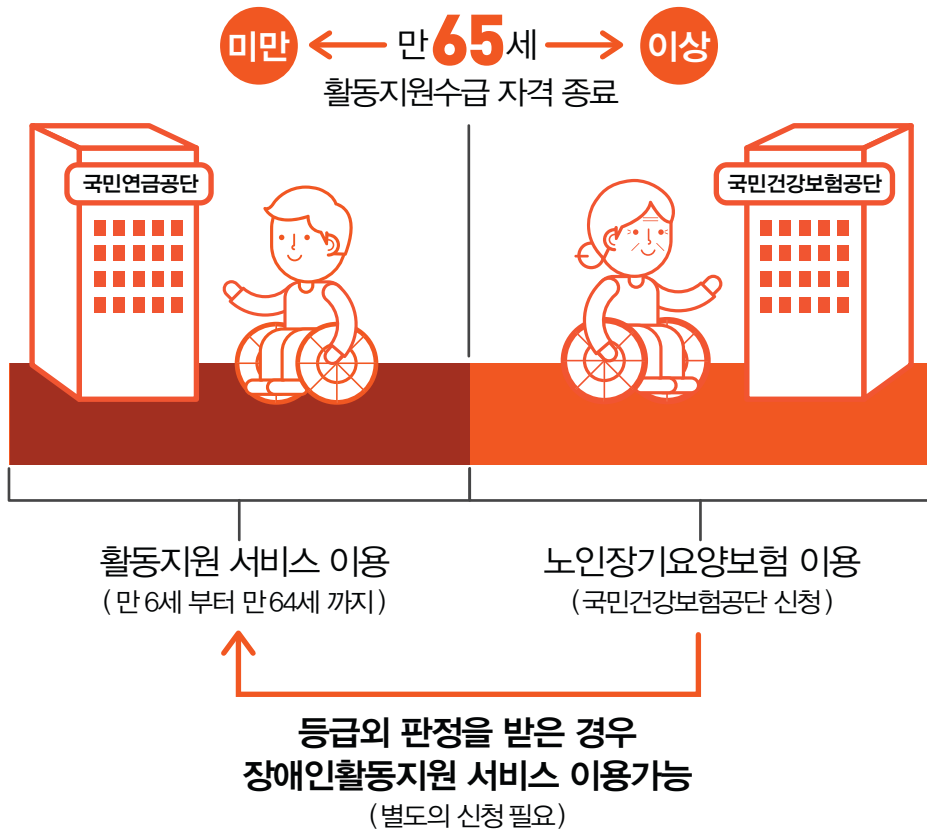


- ‘갱신신청’을 하시면 처음 신청하실 때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을 다시 결정하게 되며, 유효기간도 다시 부여됩니다.

13

65세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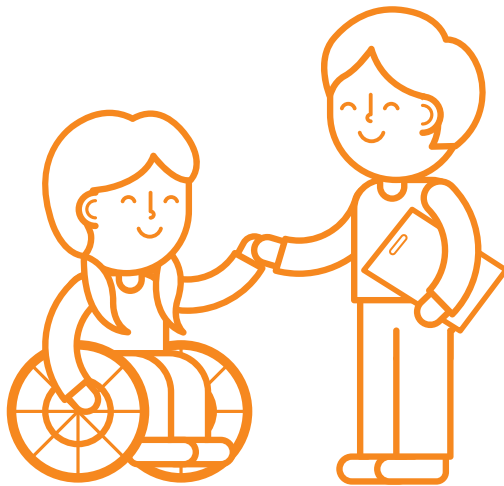
- 만 65세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던 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필요)



14

활동보조인은 어떤 분들인가요?

- 활동보조인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 실습을 마친 전문 직업인입니다.
-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원해 드려 장애인이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분들입니다.
- 활동보조인과 이용자(가족 포함)는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함께 의논하여 사용합니다.
 -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대에게 명령하는 말과 행동,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활동보조인은 서비스 단가의 75%이상을 보수로 지급받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배상책임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서비스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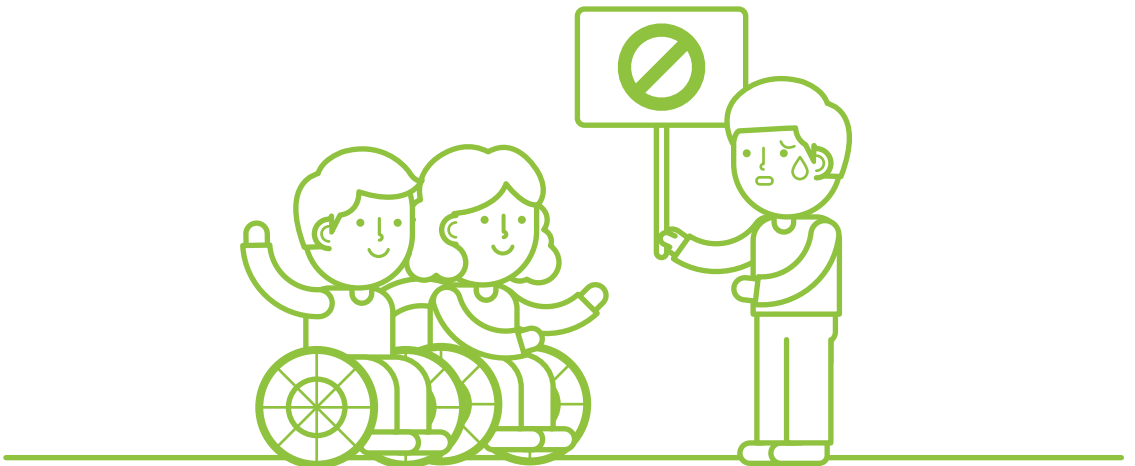
-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안마 등),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 불쾌감을 주는 행동(성희롱)을 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욕·몸 닦기 등 신체접촉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화를 통해 존중하는 태도로 요청하고 제공합니다.
- 생업 보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사, 활동보조인의 서비스가 없어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은 활동보조인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계약 당시 서로 의논하지 않은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과 먼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가족 포함)와 활동보조인(활동지원기관)이 함께 모의하여 바우처를 부정하게 결제한 후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의 대가를 주고받아서 안 됩니다.
- 물건 판매, 금전거래, 함께 술 마시기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이동을 보조할 때 활동보조인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존중합니다.

- 이용자가 종교시설에 갈 때 활동보조인이 함께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동보조인에게 종교의식에 참여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는 1인에 대하여 제공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공해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다른 이용자와 함께 있을 때 한 명의 보조인에게 같이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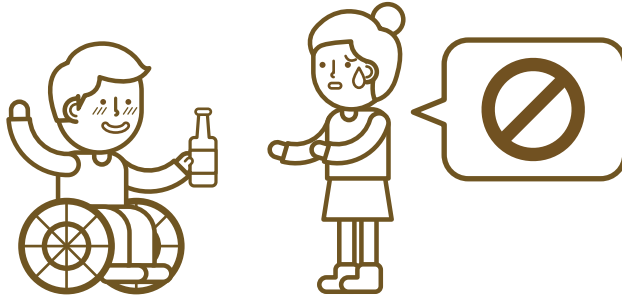


요구하면 안 되는 사례

● 사례 1 ●

“활동보조를 위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이용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자고 계속 권하시는데 마음이 불편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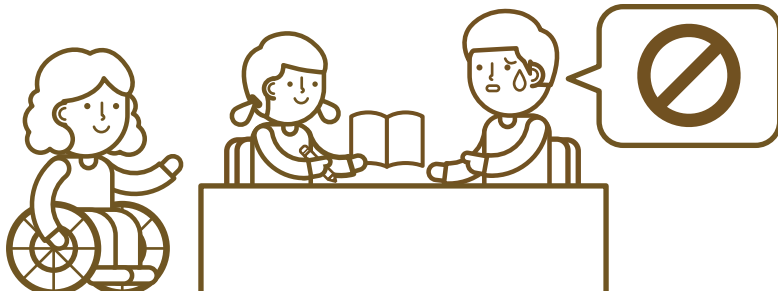
➔ 활동보조 제공시에 음주와 흡연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활동보조인에게 함께 음주 및 흡연을 하자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사례 2 ●

“이용자에게 초등학교 자녀가 있습니다. 저에게 활동보조 대신 자녀의 학습지원을 해주기를 바라셔서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활동보조인에게 학업보조 및 과외도우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자녀의 학습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근 복지관이나 학습관련 바우처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6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중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아 향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 되어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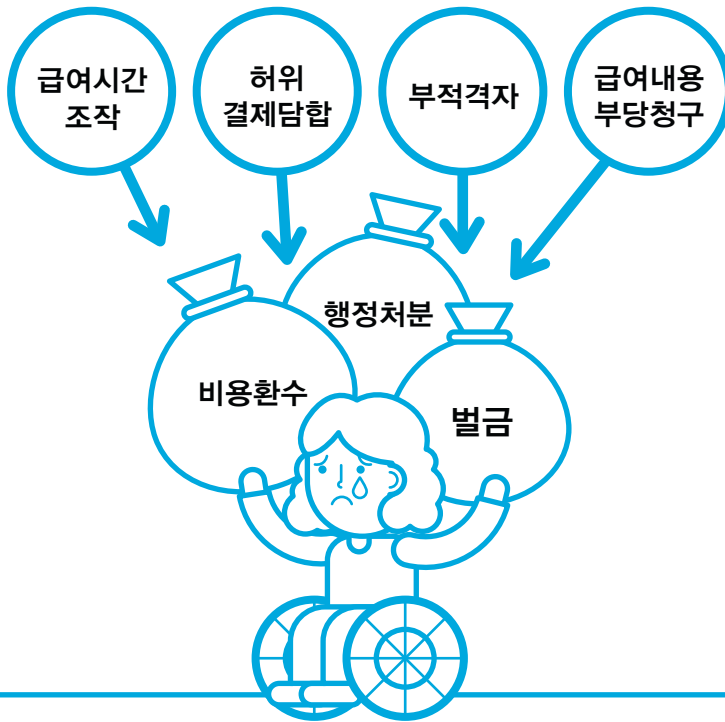
-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게 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하게 된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있게 된 경우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게 된 경우
-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 또한,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시·군·구청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요구하는 활동지원급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서비스 부정이용 경우



- 서비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환수는 물론, 벌금, 행정처분 및 과태료 및 1년간 서비스가 중지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사례

- 바우처의 잔액을 서비스 제공 없이 활동지원기관에서 월말에 일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하는 경우
-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하는 경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 없이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 비용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
 - ➔ 서로 협의하여 사용하므로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중에 어느 한 쪽이 고발을 하거나,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적발 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 02-6360-6799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홈페이지 : <http://www.socialservice.or.kr>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공단 전화번호

☞ 지사명	☎ 전화번호	☞ 지사명	☎ 전화번호	☞ 지사명	☎ 전화번호
종로중구지사	02-397-9513	군포의왕지사	031-390-8050	목포지사	061-240-3307
동대문중랑지사	02-920-0560	성남지사	031-778-0310	해남지사	061-530-2340
성북강북지사	02-901-2851	이천여주지사	031-630-7921	제주지사	064-720-4120
도봉노원지사	02-2211-2860	평택지사	031-659-0889	대구지사	053-589-4581
성동광진지사	02-3408-6657	안산지사	031-481-7760	서대구지사	053-380-3090
서대문은평지사	02-350-5549	광명지사	02-2610-2860	동대구지사	053-430-7860
용산지사	02-6220-2210	시흥지사	031-488-2740	대구수성지사	053-750-9111
마포지사	02-2176-9800	부천시사	032-610-2380	대구남구달성지사	053-470-1521
고양지사	031-920-5471	남동연수지사	032-451-0931	경주지사	054-770-3931
파주지사	031-956-3651	서인천지사	032-560-0551	포항지사	054-280-0891
의정부지사	031-828-3620	남인천지사	032-770-3543	안동지사	054-850-9050
포천지사	031-540-8021	부평계양지사	032-500-8181	영주지사	054-639-8006
구리남양주지사	031-550-5852	대전지사	042-480-4860	문경지사	054-550-3326
강남신사지사	02-3416-6170	동대전지사	042-720-4040	구미지사	054-450-8590
강남역삼지사	02-2186-4070	북대전지사	042-670-1030	부산지사	051-797-7040
송파지사	02-3433-5861	청주지사	043-251-5250	중부산지사	051-660-3213
강동하남지사	02-480-8820	옥천지사	043-730-2740	서부산지사	051-290-3571
서초지사	02-3415-0320	충주지사	043-840-0791	북부산지사	051-603-1260
관악동작지사	02-6934-2040	공주지사	041-850-3870	동래금정지사	051-550-7530
구로금천지사	02-2085-1419	천안지사	041-550-8930	남부산지사	051-610-6450
영등포지사	02-2629-2330	홍성지사	041-630-8170	남울산지사	052-226-2171
강서지사	02-2086-7181	보령지사	041-930-6650	동울산지사	052-290-6184
양천지사	02-6345-9043	광주지사	062-958-2180	창원지사	055-278-9051
춘천지사	033-259-7790	동광주지사	062-230-0749	마산지사	055-290-4558
강릉지사	033-640-9380	북광주지사	062-520-8170	김해지사	055-320-8356
삼척지사	033-571-2140	전주지사	063-270-5331	통영지사	055-650-8555
원주지사	033-749-8420	익산지사	063-850-0360	진주지사	055-760-0670
수원지사	031-229-4059	정읍지사	063-530-5804	거창지사	055-940-4520
용인지사	031-288-1380	남원지사	063-620-3420	양산지사	055-371-1510
화성오산지사	031-229-6080	순천지사	061-729-3070		
안양과천지사	031-420-2045	여수지사	061-660-5520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안내